

202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재(튼튼론)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2년 중소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용자규모 : 1,840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

□ 용자대상 및 분야

① 민간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체(신규설치 포함)

- 용자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용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용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 용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2년 1/4분기 2.1%,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신청 : 신청기간내 상시접수 가능하며, 용자대상 통보는 1월, 3월, 5월, 7월 총4회 진행

구분	신청·접수 기간 (차수별 마지막날 18시까지 접수)	심의·통보 기간*	융자 집행기간(운전, 연구개발자금)*
1차	1월 3일 ~ 1월 14일(18:00 마감)	1월 25일 ~ 1월 27일	통보일 ~ 5.30(월)
2차	1월 15일 ~ 2월 18일(18:00 마감)	3월 2일 ~ 3월 4일	통보일 ~ 7.25(월)
3차	2월 19일 ~ 4월 29일(18:00 마감)	5월 11일 ~ 5월 13일	통보일 ~ 10.24(월)
4차	4월 30일 ~ 7월 15일(18:00 마감)	7월 27일 ~ 7월 29일	통보일 ~ 12.23(금)

* 기성고용자(시설, 개보수, 설비자금)의 집행기간은 통보일부터 12.23(금) 까지

* * 차수별로 접수기간, 심의통보 일정, 용자 집행기간이 다르므로, 자금소요 일정을 고려하여 용자 신청
 * *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용자신청)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서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제출서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용자신청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직접 작성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용자사업 및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대상사업별 용자조건**

대 상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민	대중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간	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	시설설치자금	2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체	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팅(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팅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시설설치/개·보수자금	85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업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을 추진하려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2년)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2년)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서비스업체(겨울레저스포츠용품 판매 및 임대업) * 전국 집합금지(제한) 겨울스포츠시설 소재지 지역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빙상 스케이트 관련 용품을 주요 품목으로 운영중인 업체에 한함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2년)

* 2022년 용자시행에 한해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 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특별용자 시행)

- **용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 용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하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용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용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용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 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우선용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용자 우선배정

우선용자 대상	세부내용	우대분야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운전자금
사회적기업	문화체육관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제한없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대상 스포츠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1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제한없음
체육용구생산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제한없음
스포츠서비스업	마케팅, 경기, 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제한없음
친환경 인증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제한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 체육시설 내 장애인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출입구(문), 복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용자제한 사항

- 동일업체에 대한 용자한도액은 용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하며, 용자한도액은 용자금 지원 결정년도를 기준으로 함(특별용자의 경우 연간 한도액에서 제외함)
- 용자제한 업종 : 「체육시설업」 중 고가의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제외), 무도장 및 무도학원, 「스포츠마케팅업」 중 단체, 조직, 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스포츠경기업」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스포츠정보업 중 공단에서 시행 중인 복권 관련업

□ 문의처 : 튼튼론 상담센터(채팅: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스포츠산업 용자(튼튼론)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용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자 신청접수 및 상담안내

- 용자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기간내 상시 등록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 3(월) ~ 7. 15(금)
 - 접수주소 : spobiz.kspo.or.kr(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접수상담 : 1566-4573(매주 월~금/ 09:00~18:00 상담 가능 * 12:00~13:00 점심시간)

2. 용자금 대출 안내

- 본 용자지원은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입니다.
- 공단에서 용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담보평가에 의해 최종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용자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담보(부동산, 장비,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로 용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용자결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 * 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 용자금 선수령 및 집행결과 추후 제출
 -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공사 및 설비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용자금 지급

3. 용자금 집행 안내

- 모든 용자금은 '22년 집행예정인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된 자금은 '22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결과보고 및 지출증빙 필수).
-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용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용자금 취급은행

- 스포츠산업 용자는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경남, 국민, 광주,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농협중앙회(단위 농축협은 제외)



II.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 민간체육시설업체

1. 신청자격 및 용자조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대상사업(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1	대중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2	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팅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K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팅(인라인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팅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3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을 추진하려는 자	시설설치/개·보수자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용자시행에 한해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 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특별용자 시행)

2. 신청자금

- **시설설치자금** :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 제공사에 필요한 자금
- 체력단련장 체력단련기계, 골프연습장 골프 프로그램 구입, 볼링장 설비 구입비 등도 포함
- **개·보수자금** : 체육시설의 증·개축 및 설비교체 자금
-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장비로 시설설치, 개보수자금으로 통합 신청하는 것도 가능

3. 신청서류

구비서류	① 시설설치자금	② 개보수자금	③ 운전자금
1. 용자추천서(은행직인)	필수	필수	필수
2. 서약서	필수	필수	필수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4.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필수
5.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7. 사업소득증명자료	소득증명자료 있는 경우 제출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8. 사업계획승인서	등록체육시설만 제출	-	-
9. 건축허가서	지자체 건축허가서 (신축, 증축일 경우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지자체 건축허가서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인허가 경우)	-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필수	필수	필수
11. 임대차계약서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12. 용자금 산출 증빙자료	필수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13. 공사도면	필수 세부도면 등 공사예정 도면 제출	필수 세부도면 등 공사예정 도면 제출	-
14.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신고체육시설 업종 제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가능)	신고체육시설 업종 제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가능)	신고체육시설 업종 제출 (신규업체는 추후 제출 가능)
15. 현장사진	필수 (건축예정지 등)	필수 (시설 운영 사진 외관 등)	필수 (시설 운영 사진 외관 등)
16. 우선용자대상 증빙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서류 작성안내>

-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5~16번은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필수서류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등록체육시설업 : 대중제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4. <민간체육시설업체> 용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사업자증명서에 관련 종목이 없지만 신청해도 되는지?

-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해당종목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서비스업(임대업 등)으로 되어있지만, 종목은 용자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지?

-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고체육시설업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 없이 용자신청이 가능한지?

-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을 용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 종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신고확인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여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의 고유 권한이므로 세무서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 건물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가능한지?

- 물론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체육시설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자금도 신청가능한지?

- 부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용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체육시설 업종의 경우 신고필증이 필수 서류인데, 준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필증 발급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용자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Q.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의 경우 기성확인 후 용자금이 지원되는 구조인데, 용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된 부분에 대해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용자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

- 공사대금을 미리 시공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용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년도 진행된 공사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Q.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용자신청이 안되는지?

- 용자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시설은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특정인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1. 신청자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2. 신청자금

- **설비자금** : 체육용구 생산을 위한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교체와 공장설치 증·개축 및 생산시설 자동화 자금,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조비용
-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등 제경비를 포함한 연구개발자금,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3. 용자조건

- **설비자금** : 연간 용자한도 10억원 / 상환조건 10년(4년 거치후 6년간 분할상환)
- **운전자금** : 연간 용자한도 2억원 / 상환조건 5년(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
- **연구개발자금** : 연간 용자한도 3억원 / 상환조건 5년(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

4. 신청서류

구비서류	① 설비자금	② 연구개발자금	③ 운전자금
1. 용자추천서(은행직인)	필수	필수	필수
2. 서약서	필수	필수	필수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4.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필수
5.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7. 사업소득증명자료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8. 건축허가서	지자체 건축허가서 (신축, 증축일 경우)	-	-
9.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필수	-	-
10. 임대차계약서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11. 용자금 산출 증빙자료	필수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인건비, 연구개발 계약서 등)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12. 공사도면	설비 관련 도면 제출	-	-
13. 현장사진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14. 우선용자대상 증빙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용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우수체육용구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 관련법상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이 용자지원이 가능합니다.

Q. 연구개발자금을 내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용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연구개발자금의 연구개발계획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는지?

-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체육용구유통업체도 용자 신청이 가능한지?

-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용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로 선정되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문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등록신청에 대해 안내되며, 우수체육용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031-284-9566)

3. 스포츠서비스업체

1. 신청자격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운영 업체

구 분	세 부 조 건
스포츠 경기업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스포츠 마케팅업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 마케팅 관련 운영실적 및 권한이 있는 자 - 스포츠 단체, 프로종목의 주최 단체, 대회조직,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 획득 업체를 말함 ① 스포츠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조직의 인가 단체)에 대한 아래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에 연간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정규대회(종합대회, 종목별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의 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 운영사무국 등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종목별 또는 지역별 스포츠대회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② 프로종목(축구, 배구, 농구, 야구, 씨름, 볼링 등)별 개최 대회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③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 획득 업체 - 지자체 및 기업체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 사회적으로 규모와 가치가 인정된 대회의 마케팅 권한을 획득한 기업
스포츠 정보업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 스포츠출판업,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인터넷업, 스포츠 소프트웨어개발업, 스포츠 관련 앱(App)보유 등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고 있는자

2. 신청자금

- **설비자금** : 체육용구 생산을 위한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교체와 공장설치 증·개축 및 생산시설 자동화 자금,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 **운전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조비용
-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등 제경비를 포함한 연구개발자금,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3. 용자조건

- 설비자금 : 연간 용자한도 10억원 / 상환조건 10년(4년 거치후 6년간 분할상환)
- 운전자금 : 연간 용자한도 2억원 / 상환조건 5년(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
- 연구개발자금 : 연간 용자한도 3억원 / 상환조건 5년(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

4. 신청서류

구비서류	① 설비자금	② 연구개발자금	③ 운전자금
1. 용자추천서(은행직인)	필수	필수	필수
2. 서약서	필수	필수	필수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4.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필수
5.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법인사업자만 제출
7. 사업소득 증명자료	소득증명자료 있는 경우 제출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필수 (소득신고 관련 서류)
8. 건축허가서	지자체 건축허가서 (신축, 증축일 경우)		-
9.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필수	필수	필수
10. 임대차계약서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임대하여 운영중인 경우
11. 용자금 산출 증빙자료	필수 (시설공사, 원자재 구입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인건비, 연구개발 계약서 등)	필수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증빙서류)
12. 공사도면	설비 관련 도면 제출	-	-
13. 현장사진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필수(운영시설, 제품 등)
14. 마케팅권리계약서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마케팅업만 필수 제출
15. 우선용자대상 증빙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해당업체만 제출

* 1~4번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스포츠서비스업 중 용자제한 업종(해당업체는 용자지원 불가)

<스포츠마케팅업>

- 단체, 조직, 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 광고대행, 이벤트 행사 대행 업체(단, ①스포츠 마케팅 분야 3인 이상의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②최근 1년간 기업의 총매출액이 10억 이상, ③총매출액의 10%이상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의한 매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스포츠경기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스포츠정보업> 공단에서 시행 중인 복권 관련업

6. <스포츠서비스업> 용자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마케팅업의 필수서류인 마케팅 권리계약서가 무엇인가?

- 프로종목의 주최단체나 대회조직, 대회, 기타 스포츠 단체 등의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했다는 증빙자료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단체·조직·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은 용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아마추어 스포츠업과 복권업이 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단 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스포츠경기업 중 아마추어 스포츠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스포츠정보업종 중 공단에서 시행 중인 복권 관련업에 대하여는 용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구개발자금을 내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용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연구개발자금의 연구개발계획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는지?

-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스포츠서비스 업체를 운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용자신청이 불가능한지?

- 용자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홍보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 성과가 있는 경우 1년미만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운동관련 앱(App)을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용자가 가능한가?

- 스포츠관련 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용자지원이 가능합니다.



III. 스포츠산업 용자 신청양식

융자 추천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스포츠산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아래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추천합니다.

기업체명		설립일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제품	
융자 추천내용	대출과목	보증방법(담보)	
	대출예정금액	자금용도	
	대출기한	대출상환방법	

- ※ 상기 융자추천 (예정)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융자 배정 시, 추천 은행의 실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융자 지원 결정시, 융자 추천은행에서 대출심사 및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 금융기관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본 추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추천은행 확인(직인날인 필수)

년 월 일

_____ 은행 _____ (부)점장 (인)

위 추천내용과 같이 귀 기금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 확인(대표자 서명)

신청인 기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 (인)

서 약 서

업 체 명				(직 인)
사업자번호				
서 약 자	주 소			
(기관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위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사업자로서 귀 공단의 기금용자규정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아래 용자 수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용자목적에 맞게 용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나. 용자사업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용자금 집행결과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당사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안내 및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스포츠산업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고객만족도조사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
-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스포츠산업 지원 안내 및 실태조사】

- 사업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전자우편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지원이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정보)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수출액,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실태조사)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업무, 타법 법령 준수를 위하여 2년 보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4.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 개인정보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감독기관이 검사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실태조사) 개인정보 제공받는 업체 추후 선정예정(선정 후 공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스포츠산업 분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계획서 양식 안내>

필수 제출서류 4번 사업계획서는 대상업종별로 용자신청 양식이 다르니, 본인의 업종에 맞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용자신청서 파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 / 스포츠서비스업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용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IV. 주요 질의응답 사례(Q&A)

【신청접수】

Q1 2022년 용자 신청기간은?

A1 ○ 2022. 1. 3(월)~7.15(금)까지 상시접수

- 2022년 스포츠산업용자(튼튼론) 접수는 1월 3일부터 시작되며, 7월 15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상시접수 합니다.
- 용자대상 결정은 총4회에 걸쳐 통보됩니다. 예를 들어 1.14일까지 접수완료된 서류는 1차 심의대상 사업이 되어 1.25~27일중 결정통보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 1.17일 접수완료 서류→ 2차 심의기간인 3.2~3.4중 결정통보/ 7.25까지 집행
예) 1.13일 시스템에 접수했으나 서류 부족으로 1.14까지 보완이 안된경우→ 1차심의 불가→ 2차심사로 이월
- 또한 회차별로 용자 집행기한이 다르므로, 용자금 집행시점을 고려하여 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용자 신청접수 및 집행기간>

구분	공고	예산	신청접수	심의통보	집행기간(운전,연구개발자금)*
1차	22년 용자공고 2022. 1. 3~ (홈페이지 상시 게재)	1,840억원	1.3~1.14	1.25~1.27	통보일~5.30(월)
2차			1.15~2.18	3.2~3.4	통보일~7.25(월)
3차			2.19~4.29	5.11~5.13	통보일~10.24(월)
4차			4.30~7.15	7.27~7.29	통보일~12.23(금)

※ 기성고대출(시설, 개보수, 설비자금)의 집행기간은 통보일부터 12.23.(금)까지임

※ 차수별 신청현황 및 집행률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 가능/ 잔여금 발생 시 추가용자 시행

Q2 연간한도액은 무슨 뜻인지?

A2 ○ 1년간 한 용자자금별로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

- 용자 분야별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은 30억원, 개보수자금은 10억원, 운전자금은 2억원(2022년도 한정 10억원)의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 범위내에서 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에서 두가지 이상의 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개보수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1억원(2022년도 한정 10억원)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올해 연간한도액 범위에서 용자를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용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용자를 받으신 업체의 경우, 상환예정금액을 포함하여 한 업체당 총 85억원의 한도액 내에서만 용자가 가능합니다.

Q3 **용자추천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A3 ○ **용자추천서 양식에 13개 시중은행의 직인날인 후 제출(용자신청시 필수서류)**

- 공단과 약정을 맺은 제1금융권의 13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추천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거래 은행 등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가서 신청금액에 대해 담보여력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은행직인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불가하며, 제2금융권 용자추천도 불가합니다.
- 또한 용자추천서는 튼튼론 신청을 위한 사전서류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용자결정 통보 후 해당은행에서 담보관련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4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자인데,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4 ○ **세무서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제출가능**

-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신고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시설설치 자금 필수서류에 세부도면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하는가?**

A5 ○ **예상도면으로도 제출가능(업체에 의뢰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업체를 통해 제작된 도면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사업주분이 계획하시는 바를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6 **용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신청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면 탈락되는지?**

A6 ○ **제출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가능하지만, 접수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용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용자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적용금리 및 상환방법】

Q7 튜튼론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A7
- 매분기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음. '22년 1분기의 경우 2.1%
 -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매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변동된 금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Q8 튜튼론 이자 및 원금 상환기간은?

- A8
- 매분기별로 납부(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이자는 대출 실행일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셔야하며(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용자부문별로 상이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분기별로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절차 및 자금수령】

Q9 공단에서 용자결정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

- A9
- 용자결정통보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 심사를 통해 결정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그 결정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서 용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용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10 용자 신청 후 자금은 언제쯤 수령 가능한지?

- A10
- 용자결정통보서 수령 후 통상 2주~3주간의 은행심사후 자금 수령
 - 용자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정통보 받은 후 용자금 지급요청을 하면 은행의 담보심사 및 공단으로의 자금신청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지급요청 후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11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면, 튼튼론과 시중은행 대출과의 차이가 뭔가?

A11 ○ 스포츠기업만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율과 좋은 상환조건을 제공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은 공단의 직접대출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대리 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과정은 시중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은행에서 체육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좀더 좋은 상환조건과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기존대출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12 융자신청시 제출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12 ○ 공단에 은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은행변경 가능

-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융자은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양식' 다운로드

Q13 융자를 받은 후에, 사업체를 양도하게 될 경우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가?

A13 ○ 업체간 포괄적 양수계약 체결 및 은행의 심사를 통해 채무이전 가능

- 업체간 채무인수인계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의 담보 재심사를 통해 채무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은행에서 채무이전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

Q14 기존에 연구개발자금은 용역 등 제3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만 기성고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집행방법이 바뀐 것 인가?

A14 ○ '21년부터 내부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출가능

- 자체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결정 통보후 은행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출하면 됩니다.
*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등 제경비에 소요되는 자금

Q15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예정인데, 용자금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A15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임

- 운전자금과 연구개발자금을 제외한 스포츠산업 용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위한 용자라면,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기한 내 완료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용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용자금 지급 시점에 50%만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50%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용자가 가능합니다.

Q16 튼튼론 용자를 받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A16 ○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영수증, 계약서 등)이 확인될 경우 용자지원 가능

- 용자지원을 받기 전에 미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신청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자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년에 지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2년에 지출된 금액만 '22년 용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7 신청 후에 신청 분야와 상관없이 자금을 활용해도 되는지?

A17 ○ 신청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처음에 신청했던 분야와 맞는 활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에 맞지 않게 용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Q18 토지구입이나 임대보증금, 사업장 인수자금으로도 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18 ○ 부동산 구입비 등의 자금은 용자지원 불가

-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사업장 인수대금 등은 용자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도 용자대상이 아닙니다.
- 단, 사업장 운영을 위한 건축비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 튼튼론 용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에 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도 되는지?

A19 ○ 튼튼론은 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튼튼론은 스포츠기업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종료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채무변제 등의 대환용도로는 신청과 집행 모두 불가합니다.

Q20 가맹점을 두고 있는 본점에서 튼튼론을 신청하여 가맹점에 자금을 지원해도 되는지?

A20 ○ 본점 신청자금은 본점에서, 가맹점 신청자금은 가맹점에서 지출

- 불가합니다. 튼튼론은 사업신청 주체와 융자금 집행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 (본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 만약 가맹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바탕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다를 경우, 본점과 가맹점 모두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사랑 태권도 본점, 체육사랑 태권도 방이점, 체육사랑 태권도 강동점 모두 신청가능)